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19 선고 2021가합101597(본소), 2021가합101603(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등 · 기타(금전)]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지안

변론 종결2024. 8. 27.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3.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1. 1. 10.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의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공장 화재의 발생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4층에 오토 스프레이 코팅 머신(Auto Spray Coating Machine, 모델명: E,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포함한 각종 기계 1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2020. 8. 31. 08:30경 위 공장 4층에 있던 건조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곳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가 손상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기계 수리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20. 5. 15.경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20. 5. 15.~2021. 5. 15., 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21,897,644,843원(건물 및 부속설비 5,934,370,460원, 구축물 1,821,218,860원, 기계기구장치 9,028,051,166원, 집기비품 376,614,950원, 재고자산 4,737,389,407원)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16. 이 사건 보험회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인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H 유한회사(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설비 14대의 점검 및 수리 가능 여부 확인을 의뢰하였고, H는 피고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3) 피고는 2020. 11. 3.경 원고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확인한 다음 2020. 11. 11.경 G에 다음과 같이 기계의 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계 점검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기계 점검 소견서

이 사건 기계 등 생산라인을 의뢰받아 피해 상태 점검 및 수리 여부에 관한 소견입니다.

화재 진화과정에서 발포된 소방수와 그을음에 의한 피해가 기계들에서 확인되었다.

자사 수리 경우 예상 일정

예상 수리일정: 약 20~30일 소요

수리내역: 분해, 조립, 세척, 전기 투입, 전체 전장류 점검, PCL 점검, 자동화 라인 구동확인, Program

확인, 건조라인, 로더, 언로더, 본체 등 수리완료 후 견적서 제출

예상 수리인원: 5~6명

수리 가지급금: 기계 범위 및 소손 정도 기준 약 1억 5,000만 원

투입 가능일정: 2020. 11. 18.

4)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수리 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 수리 계약서

제2조[수리기간]

1. 피고는 수리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수리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3. 피고가 약정기일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수리장비에 대해 전손처리를 하기로 한다.

제3조[수리대금]

수리대금은 계약금과 수리 완료 후 작성되는 수리완료 견적서의 합계 대금으로 하기로 한다.

1. 계약금: 1억 5,000만 원
 2. 잔금: 기계 수리 완료 직후 샘플 테스트 완료 후 원고의 승인시 즉시 지급
 3. 계약금 및 잔금은 화재보험사인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 5) 피고는 2020. 11. 27.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0. 11. 30. 이 사건 기계 수리에 착수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수리계약 해제 통보

1) 원고와 피고는 수리 기간 중 상대방에게 수차례 공문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2020. 12. 9.	수리 진행 과정 중 전기 및 컴프레서의 사용 협조를 부탁함
피고	2020. 12. 28.	1. 피고 엔지니어가 2020. 12. 28. 당일 철수한 것에 유감 표명 2. 시운전 일자가 12. 23.로 결정되었으나 주말, 공휴일,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지체된 일수를 제외한 예상 수리기간 20일에 해당하는 날짜는 12. 31.임 3. 현재 95% 수리된 상태로 수리 완료까지 1~2일 소요 예정, 수리 완료를 위해 원고 오퍼레이터의 협조를 요청

피고	2020. 12. 9.	수리 진행 과정 중 전기 및 컴프레서의 사용 협조를 부탁함
피고	2020. 12. 29.	2020. 12. 28.자 공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1. 수리기간은, 수리 착수일인 11. 30.부터 주말, 공휴일,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지체된 일수 3일(12. 18., 12. 21., 12. 22.)을 제외하여 1. 8.까지임2. 수리 완료하였고 기기 최종 세팅만 남겨둔 상태임, 원고의 오퍼레이터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협조의 예: "알람- 중앙집게가 위치에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알람 발생시 중앙집게의 위치만 알려주는 등의 협조)
원고	2020. 12. 29.	1. 약정 수리기간은 2020. 12. 24.로 만료2. 수리기간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2020. 12. 31. 최종 테스트시간을 부여함3. 기계의 알람 발생 시 중앙집게의 정확한 위치를 원고는 전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조치는 장비수리 책임을 지는 피고가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함4. 만일 최종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만료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약대로 전손처리됨을 다시 한 번 통보함
피고	2021. 1. 4.	2020. 12. 31. 예정된 세팅 작업은 한파로 기온이 ~11도를 기록하며 불가피 연기됨, 천재지변임, 비교적 기온이 높은 1. 12.이 최종 세팅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니 일정 확인을 바람
피고	2021. 1. 7.	2020. 12. 31. 예정되었던 세팅 작업과 더불어 이번 주 또한 한파(천재지변)에 의해 세팅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주간 날씨 예보에 따르면 1. 12., 1. 13.이 비교적 높은 기온으로 확인되니 일정 확인하고 연락 바람
원고	2021. 1. 8.	1. 2020. 12. 23. 장비 동작 불가로 1차 샘플 테스트 실패, 기온이 최종 작업 여부를 좌우한다면 피고가 사전에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0. 12. 31. 2차 샘플테스트 불가는 피고의 책임임2. 1, 2차 샘플 테스트 결과 수리 미완료로 판단, 생산설비 가동 불가로 2차 피해 가중되고 있음3. 피고 주장처럼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양측 손해사정인과 피고 배석 하에 1. 12. 3차 샘플 테스트 진행하고자 함, 샘플 테스트 불가 시 이는 수리 미완료 및 수리 불가를 의미함
피고	2021. 1. 8.	피고 엔지니어의 주도와 원고 오퍼레이터의 협조로 세팅 진행되어야 함
피고	2021. 1. 15.	원고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시운전 하지 못함, 1. 26.~1. 28. 시운전 예정이고 협조 여부를 떠나 시운전이 안 될 경우 수리불가 확정하고자 함
원고	2021. 1. 19.	1. 약정 수리기간 이미 도과, 그럼에도 2020. 1. 18. 원고, 피고, 이 사건 보험회사 임회 하에 최종 테스트했으나 수리 불가로 최종 확인2. 약정기한 내 수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리불가 및 전손의견서 제출하여야 함에도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함3.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서 제2조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함4.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 요청
피고	2021. 1. 22.	1. 2020. 12. 23. 원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수리 완료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임2. 원고의 전기 제공 거부 및 오퍼레이터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피고는 수리 기간 도과에 책임이 없음

2) 위 표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21.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21. 2. 9. 이 사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1,983,244,727원(건물 손해보험금 67,942,744원 + 기계 14대의 전손처리에 따른 손해보험금

1,858,021,492원1) + 재고자산 손해보험금 57,280,49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9937)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 3. 31. 위 소송에 이 사건

보험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3. 1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42056887)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10,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 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수리기간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의 오퍼레이터 제공 등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샘플테스트를 하지 못한 결과 수리 완료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수리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계약 해제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수리계약의 성격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리계약은 화재로 손상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여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나. 채무이행 여부와 계약 해제의 적법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을 5, 8~11, 이 법원의 H, I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수리 계약에 따라 약정한 기간 내에 기계 수리를 마치지 못한 이행지체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2021. 1. 19.자 계약해제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수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는 2020. 11. 30. 이 사건 기계의 수리에 착수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5일 이내인 2020. 12. 24.까지 기계 수리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 계약서 제2조 제2호는 수리기간과는 별도로 피고의 작업시간을 정한 것으로, 그에 따라 수리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5일 이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원·피고가 주고받은 공문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수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그 수리기간은 최종적으로 시험운전을 하기로 한 2021. 1. 12.에는 만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2020. 12. 23. 원고와 이 사건 보험회사 측 직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를 시험 가동하였는데 '삐삐' 소리가 연속하여 나고 작업화면 창에 표시된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가동이 중단되었다. 작업화면 창에는 다음과 같은 "에러 기록 리스트"가 나타나 있다.

1	10:10	50. 입구 왕복기 하 한계 에러
2	10:10	54. 출구 왕복기 하 한계 에러
3	11:02	6. 공기압 에러
4	11:05	4. 비상 정지 스위치 에러
5	11:10	49. 입구 왕복기 상 한계 에러
6	11:11	49. 입구 왕복기 상 한계 에러
7	11:13	잉크 탱크 1 최저 한계 센서 에러
8	11:13	잉크 탱크 2 최저 한계 센서 에러
9	11:13	65. 언로더기 온라인 작동 에러
10	11:15	54. 출구 왕복기 하 한계 에러
11	12:38	50. 입구 왕복기 하 한계 에러
12	12:59	잉크 탱크 1 최저 한계 센서 에러
13	12:59	잉크 탱크 2 최저 한계 센서 에러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2022. 3. 28. 1이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2022. 5. 19.과 2022. 6. 3. 현장 조사를 마치고 2022. 8. 18.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만 제조사로부터 매뉴얼, 부품 및 인력 등을 공급받아 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수리비를 산정한 것이었고, 매뉴얼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장해석 작업, 프로그램 락(Lock) 해제 작업, 각종 알림에 대한 코드내용 해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수리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 수리업체에서 수리할 경우의 비용은 산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22. 5.~2022. 6.경 이 사건 기계의 상태를 확인할 당시 내부와 외부 스프레이에 잔여물과 얼룩이 있고 구동부가 부식되었으며 전원을 켜자 에러 알림이 발생하였다고 하므로(을 11의 23~27쪽, 33~34쪽) 당시에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H와 이 사건 기계의 국내 에이전트사인 비알테크 역시 "복구 시 제조사의 매뉴얼 제공 및 분해조립에 필요한 협조가 필요하다" 내지 "대만 본사에서 회수하여 수리 필요"라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국내 수리업체인 피고가 제조사의 매뉴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755, 8376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라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는 피고로서는, 기계 부품의 수급 가능성과 기계의 구조나 작동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제조사의 협조 없이도 국내 인력만을 활용하여 수리가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4)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0. 12. 29.에는 2021. 12. 31.까지, 2021. 1. 8.에는 2021. 1. 12.까지 기계 수리를 완료하고 시험가동해 줄 것을 통보하였는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1. 1. 19. 피고가 그 최고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4. 본소 및 반소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20. 11. 27.부터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21. 3.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나.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존부

이 사건 수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현경

판사김지영

판사김근홍

1) 원고 측 손해사정(갑 제11호증)에 따른 기계 14대의 손해액 2,008,021,492원에서 이 사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기계 수리비로 선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

2)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